

# 사용허가일반조건

## 제1조 (사용목적)

사용목적은 중구생활사전시관 내 각 시설(8개소) 운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사용기간)

사용시설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24. 12. 31.(화)로 한다.

## 제3조 (사용료)

사용료는 총액을 선납하여야 하며,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.

## 제4조 (사용료의 납부)

사용료는 본 재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

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## 제6조 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

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(사용인의 행위제한)

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## 제8조 (사용허가의 취소)

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때
- ②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(일반, 특수)에 위배한 때
- ③ 허가를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
-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⑤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
- ⑥ 기타 본 재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⑦ 본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2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서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.

## 제9조 (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)

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가 지출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.

#### **제10조 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**

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1조 (사용재산의 반환)**

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본 재단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2조 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**

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.

#### **제13조(특수조건)**

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#### **제14조 (관계법률 등의 준용)**

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의 법규를 준용한다.

#### **제15조 (어구의 해석)**

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결정에 의한다.

# 사용허가특수조건

## 제1조 (적용범위)

본 조건은 중구생활사전시관 제2관 내 각 시설(5개소)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.

## 제2조 (책임과 의무)

-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 내부 및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인력과 장비는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. 또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부주의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(종업원 포함)는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 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## 제3조 (운영시간 준수)

사용자는 중구생활사전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시관 운영시간(09:00 ~ 18:00)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4조(영업범위)

- ① 재단은 중구생활사전시관 내 타 사용시설에서 취급 할 품목과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판매 품목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. 다만, 재단의 승인 하에 판매 가능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.

연번	위치	대부시설	건물현황	사용면적 (m <sup>2</sup> )	판매가능품목	비고
1	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97 중구생활사전시관	사진관	지상1층	16.148	· 사진관	
2		양장점		38.139	· 사진관, 의류대여	
3		신흥전파사		5.242	· 집화, 완구, 악세서리, 서적 등의 기타 기념품	
4		공화춘		4.498		
5		인천도나스		11.991		
6		국일관		4.498		
7		화선장		14.693		
8		답동관		12.135		

- ② 각 시설 운영시 판매품목의 종류는 영업개시일전에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허가 목적에 위반되는 추가 시설 설치 및 영업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.
- ③ 각 시설의 판매물품 중복으로 인한 각 시설의 상호분쟁 발생 시 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④ 재단의 판매품목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5조 (사용운영)**

-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비(인테리어, 업종관련 설비 등) 및 인.허가 관련 비용은 일체 사용자가 부담하며, 설계 및 시공과정은 재단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② 지정된 용도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는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③ 영업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한다.

**제6조 (공공요금 등)**

전기료, 상하수도료, 전화료 등 제반 공공요금 및 재산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**제7조 (사용허가 취소 절차)**

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거 본 재단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.

위반횟수	조치사항	비고
1회	시정 및 주의	기간내 위반횟수
2회	경고	
3회	영업정지 10일	
4회	허가취소	

**제8조 (도난 방지)**

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본 재단의 승인 후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, 사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, 그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본 재단에 일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
**제9조 (부대시설의 설치)**

-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간판 및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본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정 시설물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에 대하여 본 재단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승인 신청하는 모든 부대시설은 「건축법」등 관계법령에 적법한 시설이어야 한다.

**제10조 (준수의무)**

사용자는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관계법률 등의 준용)**

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의 법규를 준용한다.

**제12조 (어구의 해석)**

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결정에 의한다.